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78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5월 18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위원장 황 의 형

1. 제안이유

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 경영이 가능토록 하고 일부 미비한 용어를 바로잡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.(안 제2조)
- 여성회관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함.(안 제3조)
-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감면 규정으로 함.(안 제7조)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중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 및 수수료”로 한다.

안 제3조중 금촌동 다음에 “금촌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”를 삽입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 및 본문중 “면제”를 “감면”으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	비 고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 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. 1~2. (생략) 3. “ <u>사용료</u> ”라 함은 제2호에서 규정한 여성회관의 사용에 따 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1~2. (원안과 같음) 3. “ <u>사용료 및 수수료</u> ”	
제3조(위치) 여성회관은 파주 시 금촌동 74블럭 3, 4롯트에 둔다.	제3조(위치) 여성회관은 파주 시 금촌동 <u>금촌제2지구 구획정 리사업지구내</u> 74블럭 3,4롯트에 둔다.	
제7조(사용료및수수료의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및수수 료를 <u>면제</u> 할 수 있다. 1~5. (생략)	제7조(사용료및수수료의 <u>감면</u>) <u>감면</u> . . . 1~5. (원안과 같음)	